배 상 결 정 통 지 서

(259-4576) 1999 . 1 . 18.

사건번호: 전주배심 98 년 협제 제11호

주 소 :군산시 나운동 769-4

성 명 : 이영선

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1.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

배상금 지급 해당 행정청인 전주지방검찰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지급을 청구 (우송 또는 직접제출) 하시기 바람.

(1) 동의 및 청구서 2통

(2) 배상결정서 정본 1통

(3)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

0.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-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

0.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-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2통

0. 대리인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-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

(4) 비 고

0.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등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. 배상결정에 부동의 할 경우

부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서명, 날인하여 2개월이내에 배상금 지급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시기 바람

첨부: 1. 배상결정서 정본 1통

2. 동의 및 청구서 용지 2통

3. 부동의서 용지 1통 . 끝.

전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위 원 장

배 상 결 정 서

사건번호	전주지구배심	99년	합제 2 호

신청인

주 소 : 별지 신청인표시표와 같음.
성 명 : 이 영 선 외 4명 생년월일 :
피해자와의 관계 :
위 신청인의 대리인 :

주문

신청인 이영선에게 금 8,686,478원, 신청인 김미현에게 금 661,500원, 신청인 박향순, 이진건, 이진전에게 각 금 330,750원을 각 지급한다.

사고상황

피해자 주소 : 군산시 지곡동 492의 9(11통 1반)
피해자 성명 : 이 영 선 생년월일 : 1958. 11. 23.

사고발생 일시 : 1998. 5. 14. 06:50경
사고발생 장소 : 군산시 나운동 스위스장 여관앞 노상
가해자 소속 : 주한미군 제31특수작전대대
사고 내용 :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

배상책임유무

국 가	차 차단 체	과실상계	손익상계
☑ 책임 있다 ☐ 책임 없다	☐ 책임 있다 ☐ 책임 없다	☐ %로 한다 ☐ 하지 아니한다	☐ %로 한다 ☐ 하지 아니한다

결정이유

"별 지"

사고와관련되어받은금액

내 역	지 급 관 서	액 수	일 자	배상과의 관계
1. 보험금 2. 3. 4.				

09 NOV '99 20:28 (654)4675013

금 액 | 장례비 : 199 원 지급

배상액 인용내역	배 상 내 역	산 청 액	인 용 액	비 고
	1. 요 양 비			
	2. 휴 업 배 상			
	3. 장 해 배 상	54,235,940원	7,293,478원	
	4. 유 족 배 상			
	5. 장 례 비			
	6. 재 산 손 해	100,000원	70,000원	
	7. 위 자 료	6,100,000원	2,976,750원	
	8. 개 호 비			
	계	60,435,940원	10,340,228원	

상속비 지급액	신청인 성명	비 율	지 급 액

1999. 9. 13.

전주지구 배상 심의회

위원장 이 병 기

위 원 김 영 흠 인

위 원 최 성 우

위 원 황 병 연

신 청 인 표 시

1	주 소 : 군산시 지곡동 492의 9(11통 1반) 성 명 : 이 영 선 직 업 : 목사 1958 년 11 월 23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
2	주소 : 위와 같은 곳 성명 : 박 함 룬 직업 : 1934 년 11 월 21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모
3	주소 : 위와 같은 곳 성명 : 이 진 전 직업 : 1986 년 6 월 26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자
4	주소 : 위와 같은 곳 성명 : 이 진 전 직업 : 1999 년 3 월 28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자
5	주소 : 위와 같은 곳 성명 : 김 미 현 직업 : 교사 1974 년 7 월 17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처
6	주소 : 성명 : 직업 :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
7	주소 : 성명 : 직업 :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
8	주소 : 성명 : 직업 :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

비고 : 위 신청인들 중 3. 4.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

친권자 부 이영선, 모 김미현

위 신청인들의 대리인

1.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서와 그 부속서류,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8년형제10896호 피의자 크로커 배리 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, 의료법인 금강의료재단 대성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, 전북대병원장 작성의 신체감정서 및 절차서삭 2, 3호 회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

-. 가해자 크로커 배리 이.는 주한미군 제31특수작전대대 소속 "풍사로 94B00846호 녹색포드 군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, 1998. 5. 14. 06:50경 군산시 나운동 스위스장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야파크 여관쪽에서 트알장 여관쪽으로 시속 약1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상으로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이영선(39세)운전의 군산다2722호 10싸씨 오토바이의 오른쪽옆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321,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<기일전>

-. 가해자 크로커 배리 이.는 1998. 9. 25. 이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한미행협사건으로 공무집행중의 작위에 의한 범죄로서 미군 당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

-. 가해자 크로커 배리 이.는 사건당일 공무를 수행중이었던 사실

-. 신청인 이영선은 이건과 관련하여 이미 전주지구배상심의회에서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결정을 받았는데, 다시 후유장해로 인한 추가신청을 한 사실

등이 인정됨.

2. 배상책임 유무

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은 미군측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미군측의 공무상 배상책임이 인정됨.

0 단,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: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30%과실상계함.

3. 배상범위 → 금 10,340,228 원(70,000원 + 7,293,478원 + 2,976,750원)

가. 재산 손해 : 70,000원(100,000×0.7)

0 후유장해진단서 영수증 대금 100,000원(금강의료재단 발행의 영수증)

0 과실상계: 30%

나. 장해배상 : 금 7,293,478원(원미만 버림; 2,136,058×32.51864167×0.15×0.7)

0 월실수입액 : 금 2,136,058 원(전주배심 98합계11호 배상결정에서 인정된 신청인의 월수입)

0 취업가능기간(한시적 장해기간) 해당 호프만계수: 32.5186 4167

-생년월일 : 1958. 11. 23.

-치료종료일 : 1999. 7. 20.(후유장애진단일)

-한시적 장해기간 종료일 : 2004. 7. 19.(전북대병원 발행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 이영선의 장해는 진단서작성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예상된다고 함)

(치료종료일부터 일반가동연한까지)

나이 40년 7월 해당 호프만계수 : 162.5835 0925(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)

(한시적 장해기간 종료일부터 일반가동연한까지)

나이 45년 7월 해당 호프만계수 : 130.0648 6758

(치료종료일부터 한시적 장해기간 종료일까지)

162.5835 0925-130.0648 6758=32.5186 4167

0 노동력상실률: 15%

-장해: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12급 12호(전북대병원 발행 신체감정서)

0 과실상계 : 30%

배 상 결 정 서

다. 위자료 : 합계 금 2,976,750원

0 신체장해시 위자료액

(1) 신청인 이영선 : 금 1,323,000 원

-. 피해자 본인 : 금 1,890,000원(12,000,000×0.15×(1+0.5)×0.7, 피해자 본인외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100%이외의 경우는 12,000,000×노동능력상실율이 위자료임-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참조, 단,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50%가산)

-. 신청인 이영선의 장해는 향후 5년간의 한시적 장해이므로 30%감액함.(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5 (주) 2. 참조)

-. 과실상계 : 30%

(2) 신청인 김미현 : 금 661,500원

-. 배우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

(3) 신청인 박향순, 이진건, 이진전 : 각 금 330,750원

-. 부모와 자녀는 피해자 본인의 4분의 1

4. 결론

신청인 이영선에게 금 8,686,478원, 신청인 김미현에게 금 661,500원, 신청인 박향순, 이진건,이진전에게 각 금 330,750원을 각 지급함.

위 는 정본입니다.

1999. 9. 14

전주지구배상심의회

간사 김 종 호